

제 3375 호
1987. 9. 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부 원순
편집인 : 공보관 김성
전화 : 731-4111~3
주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산동
전화 : 735-3337

(보라색)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	
제 2188 호 : 서울특별시석물위생적부결사시행규칙중개정규칙	3
◎ 고 시	
제 803 호 : 사료성분등록사항변경	3
제 826 호 : 사료성분등록사항	5
◎ 공 고	
제 540 호 : 소방설비공사업면허취소예고	5
제 542 호 : 제2종전기공사업제영업정지처분	6
제 543 호 : K·S 표시정지처분	6

(이면계속)

원									
말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544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	7
제 545 호 : 재개발사업 (마포로계 1구역 제 4지구) 시행인가를위한공람	9
제 549 호 : 관인책기	9

㉔ 사업소 · 구공고

한강관리 사업소 제 15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	10
구로구 제 4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	11

㉕ 예 규

제 490 호 :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청산금과징및교부사무 위급규정중개정규정	12
--	----

㉖ 사 령

규 칙

서울특별시식품위생취부경사시행규칙
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9월 9일

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㉞

서울특별시규칙제 2188 호

서울특별시식품위생취부경사시행
규칙중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식품위생취부경사시행규칙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“제 23 조 제 2 항”을 “제
22 조 제 2 항”으로 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시험기관) 제 2 조의 규정에
의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기
관(이하 “시험기관”이라 한다)
은 보건연구소법 제 2 조의 규정에
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보건
환경연구소와 법 제 18 조 및 동법
시행규칙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
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
로 한다.

제 4 조 중 “법 제 3 조 내지 제 10 조”
를 “법 제 4 조 내지 제 11 조”로
한다.

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 (확인시험대상) 시험기관의 확
인시험을 받아야 할 대상은 동법
시행령 제 10 조 제 2 호 및 제 53 조
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
는 구청장이 허가한 식품제조·가
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생산하는 최
후의 제품으로 한다.

제 9 조를 삭제한다.

제 10 조 본문 및 단서 중 “연구소
장”을 각각 “시험기관”으로 한다.
〔별표〕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서울특별시고시제 603 호

사료성분통화사량변경

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의 규정에
의거 사료성분통화사량 변경내용을 별
첨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년 9월 9일

서울특별시장

사료 성분 등록 변경 사항

등록 번호	공정명	소재지	대표자	사료명칭 (유도)	변경전 성분량 (%)					변경후 성분량 (%)						
					조 단 백	조 지 방	조 단 단 유	조 단 단 분	조 단 단 섬 유	조 단 단 인	조 단 단 백	조 단 단 지방	조 단 단 단 유	조 단 단 분	조 단 단 섬 유	조 단 단 인
4-134				착유 1호-1 (비유량 10kg이하)	13.0	2.5	10.0	10.0	0.7	0.6	13.0	2.0	10.0	10.0	0.7	0.6
4-135				착유 1호-2 (비유량 13kg이하)	15.5	2.5	10.0	10.0	0.7	0.6	15.5	2.0	10.0	10.0	0.7	0.6
4-136				착유 2호-1 (비유량 16kg이하)	17.5	2.5	10.0	10.0	0.7	0.6	17.5	2.0	10.0	10.0	0.7	0.6
4-137	전 국 사료(有)	자양동 227-315	전년유	착유 2호-2 (비유량 18kg이하)	15.5	2.5	9.0	9.0	0.7	0.6	15.5	2.0	9.0	9.0	0.7	0.6
4-138				착유 3호-1 (비유량 20kg이하)	17.5	2.5	9.0	9.0	0.7	0.6	17.5	2.0	9.0	9.0	0.7	0.6
4-139				착유 4호-1 (비유량 25kg이하)	19.5	2.5	10.0	10.0	0.7	0.6	19.5	2.0	10.0	10.0	0.7	0.6
4-140				착유 4호-2 (비유량 30kg이하)	16.0	2.5	10.0	10.0	0.7	0.6	16.0	2.0	10.0	10.0	0.7	0.6
4-141				착유 4호-3 (비유량 35kg이하)	18.0	2.5	10.0	10.0	0.7	0.6	18.0	2.0	10.0	10.0	0.7	0.6
4-142				착유 4호-4 (비유량 40kg이하)	21.0	2.5	10.0	10.0	0.7	0.6	21.0	2.0	10.0	10.0	0.7	0.6

14-1 제 1375 호 A1

년 1987.9.9

<p>서울특별시고시제 626 호</p> <p>사료성분등록사항</p> <p>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</p> <p>4. 성분등록내역</p>		<p>요시한다.</p> <p>1987년 9월 9일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제정일제명 : 제일유니버설주식회사</p> <p>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4-1</p> <p>3. 대표자 : 김 중 배</p>				
<p>등록번호</p>	<p>사료의 명칭 및 용도</p>	<p>사 료 성 분 량</p>				
		조단백	수분	크림구	조화분	
13-101	<p>명칭 : 발효사료(제일전조호모과유다)</p> <p>용도 : 배합사료 첨가물 및 양축기첨가물</p>	35%이상	10%이하	10%이하	15%이하	
13-102	<p>발효사료(제일라이브이스트-120)</p>	15%이상	10%이하	10%이하	15%이하	
13-103	<p>발효사료(제일라이브이스트-20)</p>	14%이상	16%이하	10%이하	10%이하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고</p> <p>서울특별시공고제 540 호</p> <p>소방설비공사업면허취소예고</p> <p>소방법 제 42 조의 6 제 1 항제 1 호 및 동법시행령 제 63 조 규정에 의거 소방</p>		<p>설비공사업 면허를 취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거 동 면허자 및 면허 기피 관계인은 '87.9.19 까지 소방본부 가도과(전화 739-7146)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987년 9월 9일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(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소대상)</p>				
상 호	영업소재지	대표자	면허종별	면허번호 및년월일	취소사유	취소예정일
서울소방건설(주)	강남구삼성동 166-6	유서준	공사업 제 1,2종	85-108호 (85.8.20)	기술능력 미달 (설비기사 4명)	'87.9.21

상 호	영업소재지	대표자	면허종별	면허번호 및년월일	취 소 사 유	취소예정일
취 대 한 기계산업	강남구역삼동 654-3	송중근	공사업 제 1 종	85-44호 (85.6.1)	기술능력 미달 (설비기사 2명)	'87.9.21
<p>서울특별시공고제 542 호</p> <p>제 2 종전기공사업체영업정지처분</p> <p>국세징수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아 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에</p>				<p>대하여 면허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전 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7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</p>		
면허번호	업 체 명	소 재 지	대표자	처 분 사 항	사 유	
184	금광전기공사	종로5가 113	이익규	영업정지 2개월 (87.9.5~87.11.3)	국세채납	
<p>서울특별시공고제 543 호</p> <p>K.S 표시 정지처분 공고</p> <p>공인표준화법 제 21 조제 1 항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통보시</p>				<p>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987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</p>		
업 체 명	천 풍 공 업 (주)			대림전자통신(주)		
대 표 자	한 제 권			오 성 국		
소 재 지	강서구 등촌동 639-23			구로구 독산동 1000-9		
규 격 번 호	KSB 7501			KSC 2508		
규 격 명	소형 볼루우트 펌프			수지입 탕남		
종 류 등 급	80 이하			RS 40B-1.6		
처 분 사 유	재료(합철, 안장강도) 기준미달			동관부식 시험 기준미달		
처 분 기 간	공고일로부터 3개월(월도 해제 시까지)			과 동		
사후관리구분	'87정기 공장검사				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4 호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별도통지를 선택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7. 9. 9
 서울특별시장

공고 및 공람 개요

1. 사용개시년월일: 아래조서참조
 2. 배수구역: 아래조서
 3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: 당산 1가 225 ~ 185 간 도로정비공사의 16개소
 4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리식의 구분: 합류식

1. 하수도법 제 6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(영등포구청장) 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.
 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져 한다.
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

공 고 및 공 략 개 요

연번	위 치 (공사명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년월일	배수구역	구분
1	당산 1가 225-185 간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170 D = 450 L = 185	'87.8	안양천	합류식
2	양평 1동 33-38 33-1 하수도정비공사	D = 600 L = 60 D = 450 L = 182.5	"	안양천	"
3	신길 4동 209-7, 144-47 간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52.5 D = 450 L = 179	"	도림천	"
4	당산 4가 91 의 2 건 하수도정비공사	D = 600 L = 162.5 D = 450 L = 165	"	안양천	"
5	양평 6가 52-43 간의 1 건 하수도정비공사	D = 450 L = 215	"	안양천	"
6	도림동 158-3 의 270 의 1 간 도로정비공사	D = 1,000 L = 282.5 D = 600 L = 90 D = 450 L = 177	"	도림천	"

연번	위 치 (공 사 명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 년 월 일	백 구 구 역	구 별
7	대림 1 동 924-878 주변 하수도개량공사	D = 600 L = 90 D = 450 L = 870	'87.8	도림천	합류식
8	대림 2 동 1060 번지 주변 하수도공사	D = 700 L = 82.5 D = 600 L = 40 D = 450 L = 87.5	"	"	"
9	대림 1 동 991-1019 주변 하수도공사	암거 2×1.5×2연 L=363 암거 2×1.5×1연 L=34 D = 450 L = 840 D = 1,000 L = 40	"	"	"
10	영동포구교주변의 1 개소 하수도공사	암거 2×1.5 L=109 암거 1.5×1.5 L=255 D = 450 L = 215 D = 600 L = 492.5	"	안양천	"
11	양정 6 가 16 번지일대 도로정비공사의 2건	D = 450 L = 110	"	"	"
12	문래동 3 가 74 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	D = 450 L = 240	"	도림천	"
13	당산 6 가 344 주변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809	"	안양천	"
14	당산동 153-154 번지간 의 2 개소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50 D = 450 L = 475	"	"	"
15	대림 1 동 960 주변 도로정비공사	D = 450 L = 145	"	"	"
16	삼흥금속주변의 2 개소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50 D = 450 L = 365	"	"	"
17	당산 1 가 85 - 문래 3 가 20 번지간 도로정비공사	D = 600 L = 435	"	"	"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5 호

마포로제 1 구역 제 4 지구재개발사업
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- 1. 건설부고시 제 345 호 ('79.9.21) 및 서울시고시 제 729 호 ('84.12.4) 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어 서울시고시 제 882 호('86.12.9) 에 의거 제 3 개발자로 지정 받은 태평양건설(주)대표 김기택으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어,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보인다.
- 2. 동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가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87. 9. 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마포로 제 1 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구역 및 면적
 - 시행구역 : 마포구도화동 46-1 의 17필지 (제 : 18필지)
 - 시행면적 : 12,478.4㎡ (공공용지 : 2,951.8㎡)
- 다. 사업시행자 : 마포구도화동 46-1 태평양건설(주) 대표 김기택

라. 건축개요

- 대지면적 : 9,526.6㎡
- 건축면적 : 3,760㎡
- 건축연면적 : 101,717㎡ (지하 6층, 지상 26층)
- 주용도 : 호텔 및 준공시설 업무시설

마. 공람기간 : '87. 9. 10 ~ '87. 10. 9 (30일간)

바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(731-6357)

사. 신청기간 : 인가일로부터 4년

아.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: 공람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9 호








관인 제거공고

제 701, 702, 703, 707, 708, 709, 710 건 부경할대장의 직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할을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

1987. 9. 9

서울특별시장

- 1. 제거일자 : 1987. 9. 8
- 2. 제거직인 : 제 701 건 부경할대장인
 - 제 702 " "
 - 제 703 " "
 - 제 707 " "
 - 제 708 " "
 - 제 709 " "
 - 제 710 " "

인 영		
공인명	제 701 전부경찰대장인	제 709 전부경찰대장인
인 영		
공인명	제 702 전부경찰대장인	제 710 전부경찰대장인
인 영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사업소 · 구공고 </div> <p>◎한강관리사업소공고 제 15 호</p> <p>공공하수도 시용개시 공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인가된 한강분류 공공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한다. 2. 관계도서는 한강관리사업소 방재과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7. 9. 9 한강관리사업소장</p>
공인명	제 703 전부경찰대장인	
인 영		
공인명	제 707 전부경찰대장인	
인 영		
공인명	제 708 전부경찰대장인	

<p>- 공고 및 공람개요 -</p> <p>1. 사용개시년월일 : 아래</p> <p>2. 배수구역 : 안양, 남지, 탄천하수처리장</p>	<p>3. 사용용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 아래</p> <p>4. 사용용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: 분류식</p>
--	--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내용

연번	위 치 (시점 및 중점)	시 설 개 요	사용개시년월일	배수구역	구 분
1	강남구 남포동 동작대학교 남측 반포천 합류지점~ 강서구 마곡동 하수처리장	관로 18,698 m 우수토실 28개소 환기구 21	'87.3.20	안양하수처리장	분류식
2	성동구 성수동 성수대학교북측 금호백수문~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현천리 하수처리장	관로 20,381 m 우수토실 37개소 환기구 18개소	'87.3.20	남지하수처리장	분류식
3	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학교남측~강남구 일원동 하수처리장 강동구 강사동 고덕천 합류지점~하수처리장	관로 20,547 m 우수토실 15개소 환기구 24	'87.8.1	탄천하수처리장	분류식

◎ 구로구공고 제 43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완료공고

1. 구로구고시 제 10 호('87.3.25) 로 시행 허가된 다음 도시계획사업(도로)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완료 되었음을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9. 9

구 로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고척동 76-300에서 77번의 2개도로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, 문교부 직할주택조합 의 3개조합 약자로 전입도로 공사

다. 공사개요 :

폭 = 15 m, 연장 = 100 m

폭 = 10 m, 연장 = 200 m

폭 = 8 m, 연장 = 160 m

다. 사업시행자

주소 : 종로구 세종로 77 번지

성명 : 문교부 직장주덕조합장

최인봉외 3 개조합장

라. 사업시행기간 : '87. 3. 25 -

'87. 8. 20

예 규

◎서울특별시예규제 490 호

서울특별시주택개발채개발사업청산금
과징및교부사무취급규칙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주택개발채개발사업 청
산금과징 및 교부사무취급규정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87. 9. 9

서울특별시 장

사 령

◎ 1987 년 9 월 5 일자

명제 283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 상 대	지방공무원법 제 53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거 휴직을 경함.	행 정 과	지방행정주사

제 1 조 중 "주택개발채권에 관한 임
사조치법"을 "도시재개발법 및
서울특별시 주택개발채개발사업 시
행조례"로 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청산의 주관) 이 규점에서
정하는 청산은 판할구청장이 주관
한다.

제 6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분양지 및 채비지액 대한 분양
처분결과 예정지 지정시의 면적에
비하여 증감이 된 경우에는 분양
지 및 채비지의 매매계약 약정에
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
징수하거나 교부한다.

제 7 조 제 1 항중 "납기경과시 년 20
%의 이자율"을 "납기경과시 년
12%의 이자율"로 한다.

제 16 조중 "납기일내 납부치 않음
경우 년 20%의 이자율"을 "납기
일내 납부치 않음 경우 년 12%의
이자율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◎ 1987년 9월 5일자 명제 284 호			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위	직 급
정순구 김찬곤 이용진	내 무 국 · ·	심사분석담당관 인 사 과 공무원교육원	심사분석 2 제장 교육훈련제장	지방행정사무관 · 행정사무관
◎ 1987년 9월 1일자 명제 285 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. 서울특별시 근무를 영함. 내무국 근무를 영함.				
			심 오 덕	
			대 통 령	
			서 울 특 별 시 장	
◎ 1987년 9월 8일자 명제 286 호			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	
김재현	대법원판결(사건 87누 255 '87.7.7) 에 의거 '86.2.24자 "견제" 처분을 동일자 취소함.	관악구	지방행정사무관	
명제 287 호				
성 명	발 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	
강길용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"감봉 1월"에 처함	북구과	지방행정주사보	
홍재학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2,3호 의 규정에 의거 "해임"에 처함	성동구	지방행정시기	
박종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2,3호 의 규정에 의거 "정직 3월"에 처함	중 구	·	
백대승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3호의 규정에 의거 "정직 3월"에 처함.	강서구	지방행정서기보	

가. 공무 해외여행 증명사항						
여행자			여행목적	여행국	여행기간	경비
소속	직위 (직급)	성명				
건설관리국 도보과	도로계획과장 (지방토목 과과)	최상식	국제 도로회의 참 가 (제 18회) (총회 참석)	벨기에 (프랑스)	'87.9.12 -9.23 (12일간)	시비
종합건설 본부	공사3담당 지방토목과	나성수				

서 울 북 별 시 장